

캡스텍 인권정책

캡스텍은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규범을 준수하며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하여 캡스텍은 고객,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는 것을 핵심적인 책무로 인식하고 있으며,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계약, 구매, 기타 비즈니스 활동 전반에서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캡스텍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Ruggie Framework)'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 원칙에 대하여 공개적 지지를 선언하고, 인권 존중과 관련한 책임을 다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캡스텍은 사업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침해의 방조 또는 공모 행위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의 인권·노동 원칙에 따라 책임을 갖는 조직, 운영구조, 모니터링 절차, 발생 사건에 대한 조치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투명한 경영 구조를 갖출 것입니다. 캡스텍은 본 정책이 캡스텍의 협력사에서 도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 적용범위

캡스텍은 캡스텍의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권을 존중하며, 임직원을 비롯해 거래 계약을 맺는 협력사 등 캡스텍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인권 리스크 관리체계

캡스텍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에 기반하여 '보호(Protect), 존중(Respect), 구제(Remedy)'의 원칙을 중시합니다. 캡스텍은 이 원칙에 따라 캡스텍의 가치사슬 전반에서 인권정책을 지지합니다. 이를 위하여 글로벌 기준을 기반으로 주요 인권 리스크 요소를 식별하여 근본적인 구제 및 완화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기본원칙

1) 차별금지

이유 없이 모든 사업활동에 있어서 성별, 성 정체성 및 지향성,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2) 다양성 존중

모든 사업장에서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및 언어적 소수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존중한다.

3)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폭행, 협박, 감금, 인신매매 등을 수반한 자유의사에 반하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모든 사업장에서 아동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4)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호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령에서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존중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또는 결성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5) 공정대우 및 교육훈련 지원

모든 임직원을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자발적인 자기계발 환경을 조성하며, 업무수행 상 필요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적극 지원한다.

6) 근로조건 준수 및 개선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하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7)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

구성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며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8) 환경보호 법규 및 규정 준수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한다.

9) 개인정보보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법규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요구 및 기록, 저장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며,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수집목적 외

이용을 금지한다.

10) 지역주민의 인권보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의 환경 및 안전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강구한다.

2026년 1월 1일

캡스텍 대표이사